I PARK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3-763-041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6.27.(금)	2025.07.07.(월)	2025.07.08.(화)	2025.07.09.(수)	2025.07.16.(수)	2025.07.18.(금) ~ 2025.07.21.(월)	2025.07.28.(월) ~ 2025.07.30.(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청약과 관련된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s://www.applyhome. co.kr)'의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서류 접수기간	계약체결
일정	2025.07.07.(월)	2025.07.08.(화)	2025.07.09.(수)	2025.07.16.(수)	2025.07.18.(금) ~ 2025.07.21.(월)	2025.07.28.(월) ~ 2025.07.30.(수)
방법	• (PC·모바일)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청약홈	• 당사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02-3번지) 방문예약 (10:00 ~ 17:00) • 구비서류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홈페이지 참고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과 – 29619호(2025.06.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년 06월 27일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7개동 총 490세대 중 일반분양 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0세대(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 가구 9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노부모 부양 3세대, 생애최초 8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5000239	1	084.3149A	84A	84.3149	23.3854	107.7003	85.0256	192.7259	39.5834	12	1	1	3	–	1	6	6	3
		2	084.7365B	84B	84.7365	23.5611	108.2976	85.4507	193.7483	39.7813	20	2	2	5	1	2	12	8	5
		3	084.9115C	84C	84.9115	23.3799	108.2914	85.6272	193.9186	39.8634	38	4	4	8	1	3	20	18	4
		4	084.6206D	84D	84.6206	23.2936	107.9142	85.3338	193.2480	39.7269	10	1	1	2	–	1	5	5	3
		5	084.7573E	84E	84.7573	23.7428	108.5001	85.4717	193.9718	39.7911	12	1	1	3	1	1	7	5	3
	계										92	9	9	21	3	8	50	42	18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84A, 84A1, 84A2, 84B, 84B1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 단위세대 표기(84A, 84B, 84C, 84D, 84E)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타입 중 인허가 도서상의 84A1 주택형은 분양편의상 84C형으로, 84A2 주택형은 분양편의상 84D형으로, 84B1 주택형은 분양편의상 84E형으로 구분하여 분양예정이오니 계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3149A	084.7365B	084.9115C	084.6206D	084.7573E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표기	총 공급세대수	동/호 구분	층 구분	해당세대수	총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1차 계약 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잔금(90%) 입주 시
84A	12	101동 5호 105동 4호 201동 5호	1층	3	623,866,880	457,733,120	1,081,600,000	10,000,000	98,160,000	973,440,000
			2층	3	637,364,000	467,636,000	1,105,000,000	10,000,000	100,500,000	994,500,000
			3층	3	650,861,120	477,538,880	1,128,400,000	10,000,000	102,840,000	1,015,560,000
			4층	3	664,358,240	487,441,760	1,151,800,000	10,000,000	105,180,000	1,036,620,000
84B	20	101동 3호 104동 2,3호 201동 3호 202동 3호	1층	5	617,983,520	453,416,480	1,071,400,000	10,000,000	97,140,000	964,260,000
			2층	5	631,365,280	463,234,720	1,094,600,000	10,000,000	99,460,000	985,140,000
			3층	5	644,689,360	473,010,640	1,117,700,000	10,000,000	101,770,000	1,005,930,000
			4층	5	658,071,120	482,828,880	1,140,900,000	10,000,000	104,090,000	1,026,810,000
84C	38	101동 1호 104동 4호 201동 1호 202동 5호	1층	1	596,122,800	437,377,200	1,033,500,000	10,000,000	93,350,000	930,150,000
			2층	4	608,985,440	446,814,560	1,055,800,000	10,000,000	95,580,000	950,220,000
			3층	4	621,848,080	456,251,920	1,078,100,000	10,000,000	97,810,000	970,290,000
			4층	4	634,768,400	465,731,600	1,100,500,000	10,000,000	100,050,000	990,450,000
			5층	4	641,228,560	470,471,440	1,111,700,000	10,000,000	101,170,000	1,000,530,000
			6~10층	15	644,458,640	472,841,360	1,117,300,000	10,000,000	101,730,000	1,005,570,000
			11~13층	3	650,861,120	477,538,880	1,128,400,000	10,000,000	102,840,000	1,015,560,000
			14~16층	3	657,321,280	482,278,720	1,139,600,000	10,000,000	103,960,000	1,025,640,000
84D	10	101동 4호 105동 3호 201동 4호	1층	2	625,135,840	458,664,160	1,083,800,000	10,000,000	98,380,000	975,420,000
			2층	2	638,632,960	468,567,040	1,107,200,000	10,000,000	100,720,000	996,480,000
			3층	3	652,130,080	478,469,920	1,130,600,000	10,000,000	103,060,000	1,017,540,000
			4층	3	665,684,880	488,415,120	1,154,100,000	10,000,000	105,410,000	1,038,690,000
84E	12	101동 2호 201동 2호 202동 4호	1층	2	619,137,120	454,262,880	1,073,400,000	10,000,000	97,340,000	966,060,000
			2층	3	632,518,880	464,081,120	1,096,600,000	10,000,000	99,660,000	986,940,000
			3층	3	645,900,640	473,899,360	1,119,800,000	10,000,000	101,980,000	1,007,820,000
			4층	3	659,282,400	483,717,600	1,143,000,000	10,000,000	104,300,000	1,028,700,000
			5층	1	665,973,280	488,626,720	1,154,600,000	10,000,000	105,460,000	1,039,14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도서상 단위세대의 타입은 84A, 84A1, 84A2, 84B, 84B1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 단위세대 표기(84A, 84B, 84C, 84D, 84E)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타입 중 인허가 도서상의 84A1 주택형은 분양편의상 84C형으로, 84A2 주택형은 분양편의상 84D형으로, 84B1 주택형은 분양편의상 84E형으로 구분하여 분양예정이오니 계약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별도의 유상옵션이 없음에 따라, 유상옵션 계약은 진행하지 아니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에는 거실, 주방, 안방에 시스템에어컨이 무상제공되며,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침실1, 침실2에 천장형 배관(시스템에어컨용)으로 설치됨에 따라 입주민이 필요시 직접 설치가능하나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차 계약금	국민은행	955501-00-004181	우방범어타운2차재건축(현대산업개발)	–
2차 계약금, 잔금		계약 체결시 세대별로 계좌부여 (가상계좌)		–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84E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1	1	–	–	–	2
	국가유공자	–	–	1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	–	2
	중소기업 근로자	–	–	1	–	1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1	2	4	1	1	9
신혼부부 특별공급		3	5	8	2	3	2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	1	–	1	3
생애최초 특별공급		1	2	3	1	1	8
합계		6	12	20	5	7	5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 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4-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4-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는 전 주택형 전용면적 84㎡으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2순위 : ① 지역 → ②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구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거주자) •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40% / 60%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 비율 / 내용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6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현황 / 보증관련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3100호	10,212,0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